

의안번호	2210547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5.6.17.
추계번호	25D29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검찰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1개 과(정원 12명)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억 7,500만원, 2030년 13억 4,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4억 4,400만원(연평균 12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검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 (안 제2조제5호)	인건비	1,068	1,095	1,122	1,149	1,178	5,612	—
	기본경비	147	151	154	158	162	772	—
	자산취득비	60	—	—	—	—	60	—
	합계	1,275	1,246	1,276	1,307	1,340	6,444	1,28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5호(정의)	“고충민원”의 범위에 검찰의 처분·수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제5호(정의)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민원과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처리건수와 경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 부서(경찰민원과)의 정원은 다음과 같음

[표 2]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처리건수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일반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	17,474	16,709	22,315	22,475	22,236	21,957	32,233	30,793	32,529	32,166
세무·농림 등 경제관련 분야	7,923	6,290	6,831	7,829	3,404	3,572	4,755	4,790	3,781	3,297
주택·건축 등 건설관련 분야	10,342	8,956	19,990	21,222	7,466	7,459	3,649	3,402	2,430	2,856
국방·병무·보훈 관련 분야	2,231	2,229	1,758	1,782	1,107	1,188	1,217	1,182	959	1,000
경찰 관련 분야	2,375	2,414	2,758	2,751	2,282	2,273	1,699	1,727	1,931	1,930
기타 분야	9,045	9,059	2,771	2,821	1,074	1,149	837	687	1,287	1,300
합계	49,390	45,657	56,423	58,880	37,569	37,598	44,390	42,581	42,917	42,54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표 3] 경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 부서(경찰민원과) 정원: 2025년 기준

(단위: 명)

부서	일반직				특정직	합계
	3·4급	4·5급	5급	6급	경감	
경찰민원과	1	1	4	4	2	1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검찰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경찰 관련 민원과 동일하다고 보고 검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과 1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검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과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¹⁾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검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는 증원 인원(4급 1명, 5급 5명, 6급 4명, 경감 2명)의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보수) 증원인원에 직급별 1인당 보수액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적용
- 2025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급별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 국민권익위원회 직급별 연봉액: 2025년

(단위: 천원)			
구분	직급	급여구분	1인당 연봉액
국민권익위원회	4급	연봉제	111,496
	5급	연봉제	85,441
	6급	호봉제	60,190
	경감	호봉제	71,642

주: 1인당 연봉액은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합산한 것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검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13.559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5,6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액	4급	인원	1	1	1	1	1	—
		1인당 연봉액	114	117	120	123	126	—
	5급	인원	5	5	5	5	5	—
		1인당 연봉액	87	90	92	94	96	—
	6급	인원	4	4	4	4	4	—
		1인당 연봉액	62	63	65	66	68	—
	경감	인원	2	2	2	2	2	—
		1인당 연봉액	73	75	77	79	81	—
	소계		945	968	991	1,015	1,039	4,957
	기관부담금		123	127	131	135	139	655
합계		1,068	1,095	1,122	1,149	1,178	5,6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인건비 52,132백만원) 대비 기본경비(8,128백만원)의 비율(15.59%)을 적용

[표 6] 개정안에 따른 기본경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경비	보수액	945	968	991	1,015	1,039	—
	기본경비 비중	15.59%	15.59%	15.59%	15.59%	15.59%	—
	소계	147	151	154	158	162	7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개정안에 따른 증원 인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증원에 따른 신규 임명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7] 개정안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자산취득비	증원 인원	12	-	-	-	-	-
	1인당 단가(천원)	4,981	-	-	-	-	-
	소계	60	-	-	-	-	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른 검찰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1개 과(정원 12명)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억 7,500만원, 2030년 13억 4,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4억 4,400만원(연평균 12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검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 (안 제2조제5호)	인건비	1,068	1,095	1,122	1,149	1,178	5,612	-
	기본경비	147	151	154	158	162	772	-
	자산취득비	60	-	-	-	-	60	-
	합계	1,275	1,246	1,276	1,307	1,340	6,444	1,28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민원과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